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2026년 7월 8일,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녹색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ESG 공시 로드맵”)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당초 논의되던 자율공시 중심의 완만한 도입 계획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즉시 통합’ 및 ‘의무화 대상의 전향적 확대’라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법정공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28년(FY27)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의무화, ② 예측·추정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 초기 3년 한시 면책 도입, ③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제3자 인증 의무화, ④ 온실가스 스코프 3 공시의 3년 유예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ESG 공시 의무화 이행을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를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본시장법상 ‘중요성’ 개념과 의무 공시 범위의 확장 논리가 상충하는 쟁점,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실무적 부담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책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글로벌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기관투자자 등 핵심 정보수요자들이 공시대상의 신속한 확대와 더불어 재무제표와 동일한 수준의 적시성을 가진 법정공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국내 입법 환경 역시 국회를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내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진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는 기업의 기후 및 에너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공시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과감한 로드맵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ESG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2026. 2. 25.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최초의 로드맵 초안 공식 발표
2. 25. ~ 3. 31.	-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외 의견수렴 기간 운영 - 기업·경제단체의 신중론과 시민사회·투자자 측의 적극론을 아우르는 30~40개의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을 거침
7. 8.	수렴된 대외 의견과 자본시장 요구를 적극 수용한 관계부처 합동 ESG 공시 로드맵 최종 확정 및 발표

2. ESG 공시 로드맵 주요 내용

<ESG 공시 로드맵 주요 내용 요약>

ESG 공시 로드맵	
공시시기, 대상	- '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 '29년 5조 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 원까지 확대 검토 ※ 다만,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공시채널, 면책	- '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 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제3자 인증	-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스코프 3 시행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가. 공시 시기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도가 전격 도입되는 원년인 2028년(FY27)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약 107개사가 의무 공시 대상에 편입됩니다. 이어 2029년(FY28)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상장사 157개사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초기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후 2030년(FY29)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59개사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반의 데이터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의무공시 첫해에 한해서는 자산과 매출액이 연결기준으로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의 공시를 한시적으로 면책하는 연착륙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의무화 첫해인 2028년(FY27)에는 한시적 면책 조항 등으로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가 184개사인데, 제도가 본격화되는 2029년(FY28)부터는 자산 기준 완화와 맞물려 3,014개사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부터는 지배기업이 관리 및 취합해야 하는 종속회사의 대상이 크게 늘어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공시 포함 기업수>

	'28년(FY27)	'29년(FY28)	'30년(FY29) ^{잠정}	'31년(FY30) ^{잠정}
기준(연결자산총액)	10조 원	5조 원	2조 원	2조 원
공시대상	107개사	157개사	259개사	259개사
공시범위 포함 종속회사수*	184	3,014	3,490	3,799

* 사업보고서상 연결공시 대상인 "주요 종속회사" (FY25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실제 공시 시점에서 공시대상기업수, 종속회사수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나. 공시 채널 법정화 및 적극적 면책 조항(Safe Harbor) 도입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당초 의견수렴안에서 제시되었던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려던 단계적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의무화 첫해인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는 매년 3월 말 감사 보고를 거친 재무제표와 동일한 채널 및 시점에 전격 공시되므로 보고의 적시성과 정보 유용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법정공시 체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책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 첫 3년간은 역사적 사실 정보를 포함한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한시적 면책이 부여됩니다. 특히 기업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제공 정보나 미래 예측·추정 정보의 경우, 사실과 다른 가정이 포함되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및 행정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행정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자 인증 의무화 및 스코프 3 시행 유예

법정공시로서 정보의 대외적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체계도 의무화됩니다. 공시 관행 정착과 인증 기준 제정, 전문 기관 등록 등 인프라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시 의무화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세부 규율 체계는 시장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인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직역 중립적인 제도로 설계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가장 고도의 기술과 인프라가 요구되는 스코프 3(Scope 3) 공급망 배출량 공시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역량을 감안하여 각 의무 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을 일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스코프 3 공시는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는데, 공급망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소기업(매출액 140억 원 이하 등)은 대기업의 데이터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공시 이행지원 및 인센티브

<ESG 공시이행지원 및 인센티브 주요 방안 요약>

ESG 공시 로드맵	
공시실무 지원	- 파일럿테스트 실시 - “한국형 시나리오분석” 개발 등
공급망데이터 산정·관리	- Scope3 산정 가이드라인 - 공급망 ESG플랫폼
ESG종합 컨설팅	- 컨설팅 & 정책자금 패키지 지원
공시 인센티브	- 기관투자자 ESG정보 활용 확대 - 전환금융 심사시 공시보고서 활용

가. 공시 실무 인프라 및 기후 리스크 플랫폼 구축

정부는 기업들이 한국형 공시기준(KSSB)을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등 주요 7개 산업군의 대표 기업들을 선정하여 공시 초안을 미리 작성해보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치사슬 범위 결정이나 재무적 영향 산출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검증된 실무 관행을 시장 전반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공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홍수나 산불 같은 물리적 위험과 탄소 규제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사업장 위치와 규모 입력만으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하여 전면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체 분석 비용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나. 공급망 데이터 산정 지원 및 플랫폼 개발

스코프 3 공급망 배출량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외주 데이터 수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확충에 나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 주요 15대 업종별로 맞춤형 공급망 배출량 산정 및 취합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완비할 계획이며,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전과정목록데이터(LCI DB) 1,000개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가 여러 대기업에게 개별적으로 ESG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협력업체가 단 1회만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다수 대기업에 한 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ESG 플랫폼’을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 ESG 종합 컨설팅 및 정책금융 패키지 확대

정부는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프로세스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컨설팅 투입을 2029년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수출 업종에 속한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강력한 금융 인센티브가 결합됩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이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약'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이 직접 ESG 진단과 컨설팅을 무상 지원하고 저리의 동반성장 자금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상생형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4. 향후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제도화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장 2026년 7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실무적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과 서식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경제단체, 정책금융기관 및 법률·회계 전문가가 총망라된 '실무 워킹그룹'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워킹그룹은 법령정비 분과, 인증 분과, 공시이행지원 분과, 금융지원 분과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부터 지역 중립적인 인증제도 설계, 그리고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까지 빈틈없는 이행 준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워킹그룹 운영 체계>

실무 워킹그룹			
금융위(총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세부분과 참여자			
법령정비	인증제도	공시이행지원	금융지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회계기준원, 상장협, 민간전문가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공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민간전문가	회계기준원, 환경산업기술원, 금감원, 거래소, 경제단체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경제단체
법령 개정안 검토	법령 개정안 검토	파일럿테스트 데이터산정인프라	컨설팅 동반협력프로그램

5. 시사점

ESG 공시 제도화로 인한 기업에 대한 영향 및 기업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 범위 재점검 및 종속회사 매핑: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의 적용 기준선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이었으나,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30조원 기준을 전제로 대응 일정을 수립했던 기업이라면 10조원 기준에 따른 데이터 산정체계와 종속회사 범위를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결기준 자산·매출이 10% 이상인 주요 종속회사는 공시 첫 해부터 산정 체계에 포함되므로, 종속회사 매핑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자본시장법상 '중요성(Materiality)' 개념과 조화 문제:

이번 로드맵이 채택한 ESG 공시기준의 확장성이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전통적인 공시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을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 사실로 엄격하게 한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등). 기업들은 향후 자본시장법의 개정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기존 판례 등 법리적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③ 입증책임 전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법률검토 체계화:

정부는 시행 초기 3년간 예측·추정정보는 물론 역사적 사실 정보까지 포함한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세이프하버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 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이 기업 쪽으로 전환되고 손해액도 법정 추정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의적 그린워싱은 애초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경과 후에는 미래 예측정보나 제3자 수집정보에 한해서만 상시적 면책이 적용됩니다. 결국 ESG 공시 정보는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로 관리되어야 하며, 판단 근거를 사전에 성실히 문서화하는 체크리스트와 승인 절차를 갖춘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④ 재무제표와 ESG 공시 간의 '정합성 및 연계 체계' 구축:

ESG 공시가 사업보고서로 통합되면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기후 위기나 탄소 규제가 자사의 자산 손상, 충당부채, 미래 수익성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재무-환경 통합 회계 프로세스'를 조기에 설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⑤ 제3자 인증 및 Scope3 관련 선제 준비 및 기후 외 영역 선택공시 전략 검토:

제3자 인증 및 Scope3 공시 관련 유예기간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와 인증 실무 관행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영역이므로, 공시 지표·산정기준 표준화, 종속회사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 공시(KSSB 기준) 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영역은 선택공시로 남아 있으나, 해외 투자자 등이 인권실사(S)·생물다양성(E) 정보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자사의 주력 수출 시장과 핵심 이해관계자 성향 등까지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 공시 로드맵'도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표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한 단계 격상시키고, 범부처 차원의 이행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녹색전환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이정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법정공시 체제로의 전격적인 전환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이자 연착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무화 시점에 맞춘 일회성 데이터 산정 대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확정될 세부 면책 요건과 세제·금융 인센티브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사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율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 현황과 KSSB 공시기준의 실무 적용 쟁점, 그리고 글로벌 그린워싱 제재 및 사법 판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ESG 공시 체계 도입 시 발생하는 각종 법리적 리스크 분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자문, 공시안의 사전 법률 검토(Legal Audit) 및 세이프 하버 요건 충족을 위한 문서화 전략 수립에 차별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ESG

기업지배구조 센터

환경

에너지

Contact

손금주 변호사

02-528-5094

kjson@yulchon.com

윤윙희 변호사

02-528-5284

yhyoon@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02-528-5698

weonjinkim@yulchon.com

이민호 고문

02-528-5441

minhol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이원일 전문위원

02-528-6415

wonillee@yulchon.com